

# 연천군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전문개정 2000. 8. 16]  
조례 제2527호]

일부개정 2010. 5. 10 조례 제2948호  
(제명개정)  
일부개정 2023. 12. 28 조례 제3923호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47조 및 제55조제2항에 따라 마을상수도와 소규모급수시설(이하 “간이급수시설”이라 한다)을 위생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5. 10>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0. 5. 10>

1. “마을상수도”란 「수도법」 제3조제9호에 따른 수도를 말한다.
2. “소규모급수시설”이란 「수도법」 제3조제14호에 따른 급수시설을 말한다.
3. “관리자”란 마을상수도의 경우 해당 지역의 군수를, 소규모급수시설의 경우 해당 지역의 사용자대표협의회의 대표자(이하 “대표자”라 한다)를 말한다.
4. “사용자”란 간이급수시설을 이용하는 지역의 주민을 말한다.
5. “사용자대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란 간이급수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로 구성된 협의회를 말한다.

**제3조(정비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간이급수시설을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설치·관리하기 위하여 5년마다 간이급수시설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군수가 제1항에 의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점검결과, 지방상수도 중·장기개발계획 및 수도정비기본계획등 관련 계획과 연계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 제2장 시설의 관리 및 보수

**제4조(시설의 관리)** ① 관리자는 시설물의 설치, 운전, 개·보수, 소독등 간이 급수시설의 운영·관리 일체를 관장한다.

② 관리자는 간이급수시설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대장을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규모급수시설의 관리자는 관리대장 1부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취수원의 보호등)** ① 관리자는 간이급수시설의 취수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취수원임을 알리는 안내판을 별표 1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간이급수시설 주위에 울타리를 설치하거나 자물쇠 장치를 하는등 사람이나 가축이 함부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수질검사)** ① 군수는 「수도법」 제19조, 제55조제1항, 「상수원관리규칙」 제25조 및 「먹는물수질기준및검사등에관한규칙」 제4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수 및 정수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검사결과를 3년간 보존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5. 10>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결과를 제16조에 따라 협의회에 통보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5. 10>

**제7조(점검)** ① 관리자는 간이급수시설의 위생적인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분기 1회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② 소규모 급수시설의 관리자는 제1항에 의한 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는 점검결과 1부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개선조치)** 관리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수질검사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점검결과 나타난 문제점에 대하여는 즉시 개선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규모급수시설의 관리자는 시설개선을 위한 조치사항을 군수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제9조(유지보수)** ① 관리자는 수원의 오염, 수량의 고갈 및 누수발생의 우려가 있거나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재해 또는 사고에 의하여 피해를 입은 간이급수시설을 우선적

으로 개·보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소규모급수시설의 개·보수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관리자가 개·보수를 시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범위, 사업기간등 급수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사용자 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규모급수시설의 관리자는 동시에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긴급복구 및 비상급수)** 군수는 태풍, 홍수, 지진등 예기치 못한 재해 또는 사고로 인하여 간이급수시설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 수돗물의 신속한 공급을 위하여 간이급수시설의 긴급복구 및 비상급수계획을 수립하여 비상사태에 사전 대비하여야 한다.

**제11조(시설의 폐지)** ① 군수는 수질오염, 시설 미사용 등의 사유로 간이급수시설을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사용자 또는 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시설폐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상수도의 공급 등으로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여건이 갖추어져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 또는 마을상수도 시설개량으로 통폐합된 지역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5. 10>

② 군수가 마을상수도를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는 관리대장에 폐지사유 등을 기록·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0. 5. 10>

**제12조(건강진단)** 군수는 「수도법」 제32조 및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라 간이급수시설의 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5. 10>

### 제3장 관리비용

**제13조(요금징수)** ① 군수는 마을상수도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마을상수도의 사용자로부터 수도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0. 5. 10>

② 군수는 사용자 또는 협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연천군 수도급수조례」에 따른 수도요금을 초과하여 징수할 수 없다. <개정 2010. 5. 10>

**제14조(관리비용)** ① 군수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수도요금을 징수하지 아니하는 지

역의 경우에는 간이급수시설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간이급수시설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간이급수시설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기준, 사용자간의 비용분담방법등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계량기)** 관리자는 수도요금의 징수, 관리비용의 부담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구별로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다.

## 제4장 사용자 대표 협의회

**제16조(설치)** 마을상수도 사용자는 급수시설의 청결유지, 관리비용 부담 등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시설단위별로 협의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0. 5. 10>

**제17조(구성)** ① 협의회는 간이급수시설 사용자중 5명내외로 선출하여 구성하되 지역 여건에 따라 적정하게 조종할 수 있다.

② 협의회 대표자는 협의회 회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대표자는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재한다.

④ 협의회에서 선출된 대표자는 그의 인적사항을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수행한다.

1. 간이급수시설의 청결유지를 위한 정기적인 청소
2. 간이급수시설의 관리비용 산정 및 부담등에 관한 사항 심의의결
3. 급수의 제한 및 중단, 수질 이상 발견등 급수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사용자들의 의견을 관리자에게 통보
4. 관리자의 조치사항등을 사용자에게 전달
5. 기타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제19조(개최)**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 개최한다.

1. 관리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2. 사용자의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3. 협의회 대표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협의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관할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5장 보칙

**제20조(실비보상)** 군수는 마을상수도 협의회의 대표자에게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 5. 10>

**제21조(교육)** 군수는 간이급수시설 협의회 대표자를 대상으로 시설물의운영·관리등에 관한 교육을 매년 1회이상 정기적으로 실시 하여야 하며, 교육은 제7조에 의한 정기점검시에 같이 실시할 수 있다.

**제22조(관리의 위탁)** ① 군수는 마을상수도 유지 및 운영·관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16조에 따라 설치된 협의회의 대표자 또는 민간에게 위탁 할 수 있다. <개정 2010. 5. 10>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은 「연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0. 5. 10, 2023. 12. 28>

**제23조** 삭제 <2023. 12. 28>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5. 10 조례 제2948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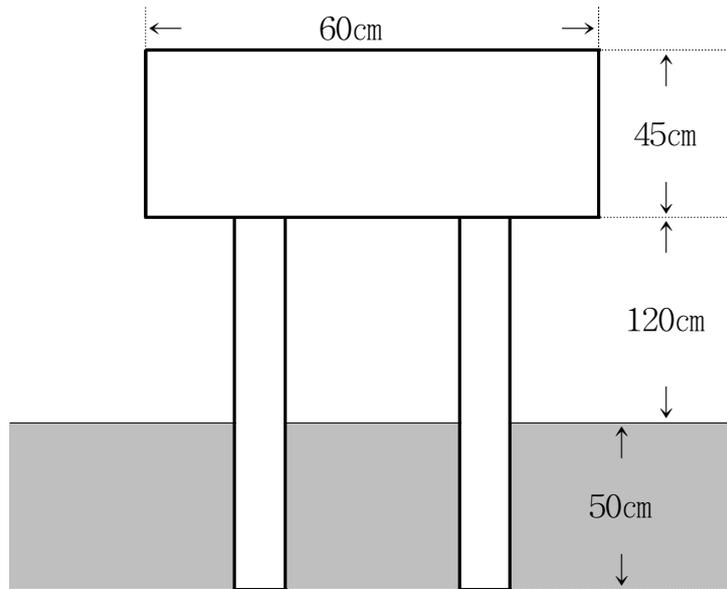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12. 28 조례 제39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개정 2010. 5. 10>

### 간이급수시설 안내판(제5조제1항 관련)



- 재질 및 두께 : 5mm내외의 스테인레스 재질
- 바탕 색 : 흰 색
- 글 씨 : 청 색

#### o 내용문

알 림	
1.	이곳은 수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마을상수도(또는 소규모급수 시설) 취수원입니다.
2.	이곳에서는 상수원의 수질보호를 위하여 일체의 수질오염 행위가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관리번호 :
o	위 치 :
o	시설용량 :
※	수질오염 및 시설이상 발견 시 연락처 : 연천군 맑은물관리사업소

[별지 제1호서식]

간이급수시설관리대장(제4조제2항 관련)

관 리 번 호		연천군 제 호									
구분	항 목	내 역									
일반 현황	위 치	경기도 연천군 읍(면) 리 마을 부락									
	협의회대표자	성 명			전 화 번 호	( ) - -					
	준공년월일	년 월 일		최초사업자							
투자 현황	총 투자액 (만원)	구 분	내 역	일 자	국고보조		지 방 비		주민부담	기 타	
		최초사업비			자재지원	현금지원	시도비	군 비			
		시설개량									
		1차									
		2차									
		3차									
		수원이전									
계											
시설 현황	수원의종류	① 지하수 ② 계곡수 ③ 용천수 ④ 복류수 ⑤ 저수지 ⑥ 하천수 ⑦ 기타									
	시설의유형	① 자연유하식 ② 양 수 식 ③ 압 송 식 ④ 기 타									
	취수시설	보유시설	① 집 수 정 ② 양수모터 ③ 기 타								
		시설내역	구 분	제 원				시 설 상 태		특기사항	
			집 수 정1				양 호	불 량			
			집 수 정2								
			양수모터1								
	양수모터2										
	정수시설	보유시설	① 소독시설 ② 침 전 지 ③ 여 과 지 ④ 배 수 지 ⑤ 기 타								
		시설내역	구 분	제 원				시 설 상 태		특기사항	
소독설비						양 호	불 량				
침 전 지											
여 과 지											
배 수 지											
송배수관로	구 분	송 수 관 로			배 수 관 로			관 종 별 총연장(m)			
		관 종	직 경	연 장	관 종	직 경	연 장				
	소 계		mm	M		mm	M				
	소 계		mm	M		mm	M				
	소 계		mm	M		mm	M				
총 계			M			M	총계: M				
급수 현황	계 획	급수인구 :	명	급수가구 :	명	1인당 1일급수량 : 리터					
	현 재	급수인구 :	명	급수가구 :	명	1인당 1일급수량 : 리터					
	제한급수	1차 :		2차 :		3차 :	계 :	일간			
수질 검사	검사시설	취 수 원	배 수 지	수도꼭지	검사기관	( 개항목)					
	합격여부				검사일시						
개량 내역	개량일자	개량시 설명	소요액(만원)	시 공 자	개 량 내 용						
수원 이전	이전사유				이전일자			소요비용	만원		
	이전위치										

※ 시설폐지시는 뒷면에 6하원칙에 의거 상세히 기록할 것

[별지 제2호서식]

간이급수시설 정기점검 대장(제7조제1항 관련)

관리번호	연천군 제 호	점검일자 : . . . 점검자 : 소속 직 성명
점검항목		점검결과
○ 취수원의 보호·관리상태		조치사항
○ 침전지의 운영·관리상태		
○ 여과지의 운영·관리상태		
○ 배수지의 운영·관리상태		
○ 관로관리 및 파손상태		
○ 소독시설의 운영·관리상태		
오염물 제거	취수원 부근	
	배수지 부근	
기 타		

※ 매 3개월마다 실시한 수질검사결과 사본 첨부

[별지 제3호서식]

간이급수시설 정기점검 대장(제7조제1항 관련)

관리번호	연천군제 호	점검일자 : . . . 점검자 : 소속 직 성명	
점검항목		점검결과	조치사항
○ 소독시설의 유무 및 가동상태			
○ 수원으로부터 반경 200M 이내에 세균성 오염원(분뇨, 퇴비, 쓰레기장등)의 유무			
○ 수원으로부터 반경 100M이내 유독성 물질(공장폐수등)의 유무			
○ 저수탱크의 누수유무 및 안전여부			
○ 저수탱크의 이물질 유입 유무			
○ 외관(냄새, 색, 탁도)의 양호 여부			